

## 사전재난영향평가(재평가) 결과 통보서

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번호		제 호		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 ] 초고층 건축물 [ 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
	설치등 구분	[ ] 신축 [ ] 증축 [ ] 개축 [ ] 재축 [ ] 이전 [ ] 대수선 [ ] 용도변경		
	건축물 명칭	준공일		
	건축주	성 명	연 락 처	
		주 소		
	건축물 현 황	면적 연면적 m <sup>2</sup> , 건축면적 m <sup>2</sup>	용 도	
		층수 지상 층, 지하 층	수용인원 명	
지하역사 명칭				
		지하도상가 명칭		
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일 (재평가 결과 통보 시 기재)		0000. 00. 00. ※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		
평가(재평가) 결과		[ ] 적합 [ ] 부적합(보완)		
부적합 사유 및 보완사항				
<p>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3항(제6조제4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(제5조의2제2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(제1조의4제2항)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평가(재평가) 결과를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시·도지사 <span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padding: 10px 20px; display: inline-block;">직인</span></p>				
유의사항	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